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6
----------	----

제출년월일 : 2019. 0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 제4조)

- 목적, 위치 및 시설, 업무, 관리자 등

나. 관리 및 운영,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3조)

- 휴장일, 운영시간, 이용신청, 행위 및 이용제한, 이용료, 이용료의 반환, 설비 설치의 사전승인, 관리 및 운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별첨)

나. 예산조치 : 2019년 예산에 124,320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 1. 11. ~ 1.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군민에게 공연문화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어종합공연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에 둔다.

② 체험장의 기본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회의실
4. 다목적실
5. 사무실
6. 그 밖의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③ 체험장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향장비

2. 조명시설
3. 빔 프로젝트
4. 냉·난방시설

제3조(관리자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및 직원을 둔다.

② 관리자 및 직원의 수·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화·공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2.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보존·관리·사용·수익허가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임시 휴장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이용예정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변경신청서를 군수(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9조 및 제10조에서도 이와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주지 못함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단체가 각각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둘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경우 문화·공연 등을 하는 군 소재 단체
3. 군 소재 관계 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회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행사 외의 행사

제8조(행위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유지 및 공연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및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허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정해진 납부기일 내에 해당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이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④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상 시설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9조(이용료 등)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체험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단, 군에 있는 직장 또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동호회 행사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공연 또는 행사의 주체가 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이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을 못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 허가사용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고 군수가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설비 설치의 사전승인)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해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운영)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이용료(제10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이용료

시설명	단 위	이용료(원)
공연장	오 전 (09:00~13:00)	40,000
	오 후 (14:00~18:00)	40,000
	야 간 (19:00~23:00)	50,000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시간당	10,000

- 가. 토요일·공휴일은 이용료의 30퍼센트를 더함
- 나. 오전·오후·야간을 각 1회로 간주함
- 다. 이용료는 1회 기준임

2. 부대시설 이용료

구 분	단위	이용료(원)
음향장비	1회	10,000
조명시설	1회	20,000
빔 프로젝트	1회	10,000
냉·난방시설	1시간	10,000

※ 오전·오후·야간을 각 1회로 간주함

관계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제2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3조(관리자 등)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책임자(이하“관리자”라 한다) 및 직원을 둔다.
- 제4조(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2.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보존·관리·사용·수익허가 업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2019년 기간제 근로자 지원내역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기준으로 하여 상향된 금액으로 한다.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액 : 124,320천원
- 인건비 산출근거 : 44,476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67,000원×2명×262일=35,108,000원
 - 주휴수당 : 67,000원×2명×52일=6,968,000원
 - 4대보험 부담금 : 2,400,000원
- 일반운영비 산출근거 : 59,844천원
 - 사무관리비 : 19,044,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32,400,000원
 - 시설장비 유지비 : 8,400,000원
- 자산취득비 : 2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시설관리과장 남궁 경
연락처	(033) 330 - 279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24,320	124,320	124,320	124,320	124,320	621,600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5,108	35,108	35,108	35,108	35,108	175,540
	주휴수당	6,968	6,968	6,968	6,968	6,968	34,840
	4대보험료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사무관리비	19,044	19,044	19,044	19,044	19,044	95,220
	공공요금 및 제세	32,400	32,400	32,400	32,400	32,400	162,000
	시설장비유지비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자산취득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